

공포조례안 예산반영 현황 보고

<'25.11, 관광체육국>

□ 공포 조례안 및 예산반영 현황 내역(2024년 5월~2025년 4월)

연번	조례명	공포일	주요 제·개정 내용	예산반영 현황
1	서울특별시 서울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4.7.15.	◦ 해외 현지 마케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서울관광재단도 해외지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관광정책과)	◦ 해외지사의 설립 근거 관련 규정으로 현재 예산 미반영
2	서울특별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4.7.15.	◦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이 '24.12.31.로 만료됨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을 '29.12.31.까지 5년간 연장(관광정책과)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방법의 변경에 따라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용도에서 '건물 매입 비용' 삭제(관광정책과)	◦ 관광진흥기금의 운용기간에 대한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방법에 관한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3	서울특별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5.3.27.	◦ 서울 공정관광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관광정책과)	◦ 지역기반 관광 활성화 (공정관광위원회 운영 등) ▶ ('25년)4백만원 ▶ ('26년)4백만원(안)
4	서울특별시립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4.5.20.	◦ 대규모 체육시설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체육시설 주차요금 감면혜택을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민원을 해소하고자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정수 및 감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체육정책과)	◦ 체육시설 인근 주민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24.9.30.	◦ 고령층을 포함한 디지털약자의 시립체육시설 이용 접근성을 높이고, 임산부에 대한 예우와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기 위해, ◦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예약 방법을 다양화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산부 본인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 등을 규정(체육정책과)	◦ 이용 예약방법, 사용료 기준 등 관련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연번	조례명	공포일	주요 제·개정 내용	예산반영 현황
		'2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은 시립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규정함(체육정책과)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여 사용· 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 30일의 범위에서 사용 허가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체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년 체육시설 개보수 및 관리에 대한 예산 확보 ▶ ('25년) 57,053백만원 ▶ ('26년) 61,746백만원(안) 사용허가 조건 관련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5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	'24.9.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체육회와 지방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이 시행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 무상 대부 및 사용수익, 수의계약으로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함(체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등 관련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6	서울특별시립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	'2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장이 태권도 선수 및 팀의 태권도 훈련을 활성화하고자 시립체육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 조항 신설(체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용 근거 관련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7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5.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직장운동경기부를 수탁하여 운영하는 수탁자가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휘장 및 및 브랜드를 경기인 및 임원 피복, 이동 차량 등에 부착하여 홍보 할 수 있는 근거 마련(체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시 브랜드 홍보 관련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 관련 별도 예산은 없으나 직장운동경기부 일부 장비, 피복 등에 서울시 브랜드 부착
8	서울특별시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5.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인기 종목의 발전 및 활성화와 효과적인 종목별 청소년 유망주의 진로 지원 등을 위해 비인기 스포츠 종목 활성화와 청소년 유망주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 설치, 관련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체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市체육회 육성 및 기금사업(비인기 종목 활성화 및 청소년 유망주 지원) ▶ ('25년) 2,160백만원 ▶ ('26년) 2,645백만원(안)
9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	'25.3.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클럽에 대한 용어의 정의 규정,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 근거 규정 신설(체육진흥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 신설(체육정책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스포츠클럽 용어 정의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근거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 사용료 감면 관련 규정으로 소요비용 없음